

#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2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 이후 도래할 금융시장 회복기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며 미래 산업계를 주도할 신산업(로봇·인공지능·바이오 등) 육성을 위해,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할 벤처펀드를 운영하고자 함
- 나. 이에 2024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는 펀드 출자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자근거
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제1항 제1호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제4항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(기금의 용도)

### 나. 추진방향

- 공익성(중소기업 성장 유도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의 조화
- 정부자금(모태펀드) 및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·효율적인 운용
- 자금을 적기에 공급한 후 회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

다. 출자대상 :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라. 출자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

마. 출자의 필요성

- 미래혁신성장펀드('19년~'22년/4개년)를 조성하여 차세대 신산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성장을 통한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, '24년에도 지속적으로 벤처캐피탈 펀드에 출자하여 서울시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

**[참고-미래혁신성장펀드 투자기업 성과]**

(수혜기업) 470개 기업	
(매출증대) +1조 2,800억원	
(고용창출) +8,236명	※ 미래혁신성장펀드 도입 시 대비 '22년 말 기준

- 미래혁신성장펀드에 이어 서울 Vision 2030펀드('23년~'26년)를 확대 조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, 향후 서울시 경제성장의 정책적 효과를 지속 강화하고자 함

**3. 서울 Vision 2030펀드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등 출자 계획**

가. 추진방향

-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펀드 운용
  - 정부출자기관(모태펀드 등)과 민간출자를 확보하여 안정적 자원 확보
- “투자 → 회수 → 재투자”를 통한 자원 조성의 선순환구조 확립
  -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회수전략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
- 미래 투자수요 보완 및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펀드 재구조화
  -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혁신기술 분야 펀드 신규 조성
  - 市 정책 사업 및 투자 소외기업을 위한 전략 투자 추진

## 나. '24년 펀드 출자 계획안

- 출자규모 : 702억원(서울Vision2030펀드+미래혁신성장펀드)

투자대상		내 용	출자액
서울 Vision 2030 펀드	①스케일업펀드	글로벌 창업생태계 Top5 구현을 위한 대규모 후속투자 목적의 스케일업(Scale-up) 펀드 조성	125억
	②첫걸음동행펀드	서울시 정책사업(R&D지원사업 등) 연계 및 민간 시장 투자 소외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	50억
	③디지털대 전환펀드	미래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기술기업(ICT, AI, 빅데이터, 6G 등)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	75억
	④창업지원펀드	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기창업 분야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펀드 조성	75억
	⑤서울바이오펀드	바이오·의료·헬스케어 등 미래 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에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	50억
	⑥문화콘텐츠펀드	K-콘텐츠 강국을 선도할 서울시 유망 문화콘텐츠 산업분야의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	50억
녹색업 창업펀드	⑦녹색기업창업펀드	서울형 7대 녹색산업에 속하거나 녹색기술을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	8억

※ '24년도 출자규모에는 서울Vision2030펀드에 앞서 미래혁신성장펀드로 조성하였던 6개 펀드\*의 출자 약정액 잔여분(269억원)도 포함

\* 4차산업혁명펀드, 스마트시티펀드, 재도전지원펀드, 문화콘텐츠펀드, 창업지원펀드, 바이오펀드

※ '24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에 따라 펀드 출자금 변동 가능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#### 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# 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#### 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경제정책과 산학협력팀 고성한 (☎2133-5234)